

투자설명서 변경 내용

□ **대상펀드명** : 트러스톤제갈공명연금저축증권투자신탁[주식]

□ **변경 사유** : ① 제10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②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③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④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 **효력발생일** : 2023. 6. 2.

□ **변경 내용**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u>고유재산 투자금 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u>)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정보

투자비용	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	2022. 3. 31. 기준	2023. 4. 28. 기준
	제 10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	2023. 5. 9. 기준
투자실적 추이(연평균 수익률)	제 10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	2023. 5. 9. 기준



트러스톤자산운용

운용전문인력	최근 기준으로 기재	-	2023. 4. 30. 기준
투자자 유의사항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입방법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15시 30분 이전(경과 후) : 제 2(3)영업일 기준 가격으로 매입	15시 30분 이전(경과 후) : <u>2(3)영업일</u> 기준가격으로 매입
환매방법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15시 30분 이전(경과 후) : 제 2(3)영업일 기준 가격으로 제 4(4)영업일에 지급	15시 30분 이전(경과 후) : <u>2(3)영업일</u> 기준가격으로 <u>4(4)영업일</u> 에 지급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최근 기준으로 기재	-	2023. 4. 30. 기준
5. 운용전문인력 나. 운용중인 집합투자 구에 관한 사항	최근 기준으로 기재	-	2023. 4. 30. 기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위험 나. 특수위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신 설〉	<u>증권대여위험 및 증권차입 위험 기재</u>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위험 다. 기타 투자위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집합투자기구 해지의 위험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투자신탁의 수익	집합투자기구 해지의 위험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투자신탁의 수익

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증권을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투자신탁 해지하는 경우, 투자신탁
 (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
 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 설정한 후 1 년(성과보수
 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 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존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
 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 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
 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 50 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
 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한다)을 설정하고 1 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
 있습니다. 의 경우 2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
 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
 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위험	최근 3 년 수익률 변동성 변동에 따른 변경	<u>표준편차 : 21.59%</u>	<u>표준편차 : 17.37%</u>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 정사항 반영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매입		15 시 30 분 이전(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제 2(3)영업일에 공고되는	15 시 30 분 이전(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제 2(3)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 환매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 정사항 반영	2)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 가격 및 환매대금 지급시 기 15 시 30 분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 구한 날로부터 제 2(3)영 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 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 4(4)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2)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 가격 및 환매대금 지급시 기 15 시 30 분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 구한 날로부터 2(3)영업 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4(4)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 정사항 반영	<u>대차대조표</u>	<u>재무상태표</u>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 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 되는 보수 및 비용	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 준으로 기재 제 10 기 재무제표 확정 에 따른 갱신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 정사항 반영	2022. 3. 31. 기준 - <신 설> <신 설>	2023. 4. 28. 기준 2023. 5. 9. 기준 증권거래비용 내역, 증권 거래비용에 포함되는 항목 등 기재 금융비용 내역 기재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2)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아래 ※별 첨 참조	2)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아래 ※별 첨 참조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제 10 기 재무제표 확정 에 따른 갱신	-	2023. 5. 9. 기준
1. 재무정보 가. 요약재무정보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 정사항 반영	<신 설> <신 설>	증권대여 또는 증권차입에 따른 기타수익 또는 기타 비용 내역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주식의 매매회전율>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제 10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	<u>2023. 5. 9. 기준</u>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실적	제 10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	<u>2023. 5. 9. 기준</u>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최근 기준으로 기재	<u>2022. 4. 30. 기준</u>	<u>2023. 4. 30. 기준</u>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 내용	최근 기준으로 기재	<u>제 23 기(2020.12.31)</u> <u>제 24 기(2021.12. 31)</u>	<u>제 24 기(2021.12.31)</u> <u>제 25 기(2022. 12. 31)</u>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 규모	최근 기준으로 기재	<u>2022. 4. 30. 기준</u>	<u>2023. 4. 30. 기준</u>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 정사항 반영	(1) 주요업무 (생략)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업무	(1) 주요업무 (현행과 같음)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 <u>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관리 중인 집합투자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u> 등의 확인업무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사명 변경	<u>KIS 채권평가주식회사</u>	<u>KIS 자산평가주식회사</u>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u>제 5 영업일</u>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u>5 영업일</u>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정사항 반영	개 (1) 집합투자업자는 아래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	개 (1) 집합투자업자는 아래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

나. 임의해지

인을 받지 않고 투자신탁 인을 받지 않고 투자신탁
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
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 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
니다. 니다.

① ~ ② (생 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투자신탁(존속하는 동 ③ 투자신탁(존속하는 동
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 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
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
서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서 설정한 후 1 년(법 시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 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만인 경우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
우에는 설정 이후 2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
원 미만인 경우

④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 ④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 년(법 시행령 제 81 조제
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
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
후 2 년)이 지난 후 1 개
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2) 수시공시

(2) 수시공시

관한 사항

①(생 략)

①(현행과 같음)

나. 수시공시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
정사항 반영 개의 결정 및 그 사유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
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 230 조에 따른 환매금
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
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
를 포함한다)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정사항 반영

⑧ 투자신탁(존속하는 동 ⑧ 투자신탁(존속하는 동



트러스톤자산운용

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 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 서 설정 이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 192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 될 수 있다는 사실

⑨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 192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 될 수 있다는 사실

⑩ (생 략)

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 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 서 설정 이후 1 년(법 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 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 192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⑨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 년(법 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 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 년)이 지난 후 1 개 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 192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⑩ (현행과 같음)

※ 별 첨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가목 및 나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 가. 연 1,800만원(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 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 (이하 “전환금액”) 중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공제제도	<table><tr><th>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th><th>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th><th>세액공제율</th></tr><tr><td>4.5천만원 이하 (5.5천만원 이하)</td><td>600만원</td><td>15%</td></tr><tr><td>4.5천만원 초과 (5.5천만원 초과)</td><td>(900만원)</td><td>12%</td></tr></table>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세액공제율	4.5천만원 이하 (5.5천만원 이하)	600만원	15%	4.5천만원 초과 (5.5천만원 초과)	(900만원)	12%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세액공제율							
	4.5천만원 이하 (5.5천만원 이하)	600만원	15%							
	4.5천만원 초과 (5.5천만원 초과)	(900만원)	12%							
※지방소득세 별도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 2023.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3.3%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한도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제외) 1,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선택 가능 (단, 23.1.1 이후 연금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분리과세 적용 -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치료·요양 가입자가 사회재난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전]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50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세액공제율
4천만원 이하 (5.5천만원 이하)	400만원 (700만원)	600만원 (900만원)	15%
1억원 이하 (1.2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2억원 초과)	300만원 (700만원)		12%
※지방소득세 별도			
※50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적용 및 적용제외 대상			
- 적용시기 : 2020.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적용기한 : 2022. 12. 31.			
- 적용제외 대상 : ① 종합소득금액 1억원 또는 총급여액 1.2억원 초과자			
②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자)			

[변경 후]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세액공제율
4.5천만원 이하 (5.5천만원 이하)	600만원 (900만원)	15%
4.5천만원 초과 (5.5천만원 초과)		12%
※지방소득세 별도		
〈삭 제〉		
〈신 설〉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 2023.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